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개정조례(안)

2005. 4. 14.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5년 3월 24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5년 3월 25일
- 다. 상정일자 : 제111회 임시회 제1차위원회 (2005. 4. 14)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치수과장 김 길 영

가. 제안이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2004. 3. 11)됨에 따라 동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용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통해 새로이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안 제2조)
 -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 기금의 운용수입
 - 기타 잡수입 등
-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은 누계잔액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 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 금액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안 제3조)

○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안 제6조)

-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 재난관련 장비 구입

○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용자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음.(안 제7조)

- 영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 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 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용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이하로 하고 용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용자기금 규모와 용자 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 그 밖의 기금의 용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음.(안 제10조)

-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된다.

-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구 소속 실·국장 또는 담당관·과장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 안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치수과 기금관련업무담당주사가 된다.

○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안 제11조)

- 기금의 운용계획
-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 기금의 결산
-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음.(안 제13조)

-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기금의 조성계획
- 기금의 사용계획
- 기금의 운용방법
-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 관 수)

○ 동 조례안은 태풍홍수 등 자연현상에 의한 재해 예방복구 등의 대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마포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폐지하고, 2004. 3. 11일 법률 제17188호로 제정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현행 서울특별시마포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전부개정방식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개정내용>

○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는 장기예치기금액과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의 예차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7조에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필요한 때에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대피 또는 퇴거

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9조에서는 기금운용관을 치수과장에서 건설교통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을 기금업무담당주사에서 치수과장으로 상향조정하였음.

- 안 제10조 내지 안 제13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심의사항,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부칙 안 제2조에서는 서울특별시마포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폐지하고, 부칙 안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의 자산, 채권채무 등의 관라의무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재난관리기금에 송계되도록 규정하였음.

<검토의견>

- 동 건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4. 3. 11일 법률 제7188호로 제정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현행 서울특별시마포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전부개정 방식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관련부서에서는 재해예방 및 복구 등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질의요지(정형기 위원) : 기금출납원의 직급이 상향된 이유는?
- 답변요지(김길영 치수과장) : 책임을 격상시키는 것임.
- 질의요지(유웅봉 위원) :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 민간인도 있는가?
- 답변요지(김길영 치수과장) : 한전, 도시가스 등 유관부서와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질의요지(신봉현 위원) : 재난안전관리과는 행정관리국, 재난
관리기금은 건설교통국에 있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 답변요지(김길영 치수과장) : 시행 후 문제점이 있으면 부분보완
및 개정하겠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5. 04.

제 출 자 :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2004. 3.11)됨에 따라 동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통해 새로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골자

가.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안 제2조)

- (1)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 (2) 기금의 운용수입
- (3) 기타 잡수입 등

나.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은 누계잔액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 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 금액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안 제3조)

다.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안 제6조)

- (1)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 (2)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 (3)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 (4) 재난관련 장비 구입

라.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용자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음.(안 제7조)

- (1) 영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

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 (2)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용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용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용자기금 규모와 용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 (3) 그 밖의 기금의 용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마.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음.(안 제10조)

- (1)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 (2)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3)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된다.
- (4)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구 소속 실·국장 또는 담당관·과장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 안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5)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치수과 기금관련업무담당주사가 된다.

바.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안 제11조)

- (1) 기금의 운용계획
-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 (3) 기금의 결산
-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사.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음
(안 제13조)

- (1)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2)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 기금의 조성계획
 - (나) 기금의 사용계획
 - (다) 기금의 운용방법

(라)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3 개정 근거

(1)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제68조, 동법 시행령 제74조, 제7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4 조례(안) : 따로붙임

5 예산 조치 :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6 기타 사항

가. 입법예고 : 2005.2.5 ~ 2.26(특이사항 없음)

나.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05.3.14)

다.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기타 잡수입 등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년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년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정금고(지방재정법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당해년도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의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제1항 및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의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2.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3.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4. 재난관련 장비 구입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용자 등) ① 영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 법 제40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용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용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용자기금 규모와 용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밖에 기금의 용자조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제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건설교통국장
2. 기금출납원 : 치수과장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된다

④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구 소속 실·국장 또는 담당관·과장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 안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치수과 기금관련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금의 용자에 관한사항
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서울특별시마포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기금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조례에 의한 기금의 자산·채권·채무 등 권리·의무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재난관리기금에 승계된다.